

국내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리더십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making, Leadership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for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최효진(Choi, Hyo jin)**

1. 서론
2. 선행연구 분석
 - 1)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및 국내 공공 부문 시청각기록 관련 연구
 - 2) 해외 시청각기록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3.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수집 현황
 - 1) 영구보존 대상 시청각 기록 이관 현황
 - 2) 해외 시청각기록물 및 민간 수집 대상 시청각기록물 수집 현황
 - 3)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수집 현황
4. 공공 시청각기록물 관련 법률 조항과 공공표준 분석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분석
 - 2) 시청각기록물 수집 및 관리 관련 공공표준 분석
 - 3) 시청각기록물 생산 및 관련 지침
5. 공공 시청각기록물 관련 법률 및 공공표준 개정 방안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2) 관련 공공표준 주요내용 개정
6. 시청각 기록 관리 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정책 리더십 제고
 - 1) '공공영상'의 개념과 범주
 - 2)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기본원칙
 - 3) '공공영상'수집위원회 운영
 - 4)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공공영상' 영구 보존 기능
 - 5)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공공영상' 접근성 보장 및 권리관계 관리 기능
 - 6)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련 표준화 및 다양한 정책마련
7.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21년 8월 발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연구원,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상임이사 (ninonchoi@naver.com)

■ 투고일: 2022년 03월 15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4월 15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4월 20일

■ 기록학연구 72, 91-163,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2.091>

〈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할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제어 : 공공기록, 기록관리 전문직, 기록관리 리더십, 시청각 기록관리, 영상아카이브, 영상아카이빙, 동영상공유플랫폼, 유튜브, 공공 영상아카이브, 공공영상문화유산, 영상납본제

〈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lies on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udiovisual archives are still not specialized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use of online video platforms including 'YouTube' has become common. Accordingly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high-definition and high-capacity audiovisual archive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However, it also emphasizes that there are no references or principles in the current *Public Records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public standards, and guidelines. This paper ultimately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re related to audiovisual archives of the current *Public Records Act*, which needed to be revised and enacted due to the lack of an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manual of national institutions, public broadcasters, and organizations can refer to.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at kind of systems and guidelines are used in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of audiovisual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It also analyses the systems and the guidelines methodically for efficient audiovisual record management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ector. It suggests the new direction of relevant public standards and guidelines through this research. Furthermore, it measures to activate the audiovisual management policy-making func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Public Audiovisual Archives* as an organization was also reviewed in this paper. The *Public Audiovisual Archives* will collect *Public Audio and Video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legal deposit system. And it will be operated by the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so that it can be used for public as a collective memory. Finally, it will take a charge of a professional role in audiovisual record management field, such as 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safeguard and protect the copyrights through this process.

Keywords : Public Archive, Archival profession, Archival Leadership,
Audiovisual Archiving, Video Sharing Platform, Youtube,
Public Audiovisual Archives, Public Audiovisual Heritage,
Audiovisual Legal Deposit

1. 서론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영상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2021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은 처음 조사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포인트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69.7%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56). 코로나19가 심화된 2020년 하반기 이후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의 이용은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MZ세대들에게 ‘유튜브’ 등에서 접하는 동영상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언어이기도 하다. 한 조사업체가 최근 발표한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는 네이버에 이어 검색 서비스 순위 2위에 올랐다. 응답자 중 57.4%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 검색을 한다고 답했으며 네이버는 88.1%로 1위, 구글은 48.6%로 3위에 올랐다(김근욱, 2021.5.9).

이런 가운데 공공 및 민간 기록 관련 사업에서도 시청각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크고 작은 아카이브 사업에서 다양한 주제의 기록수집 및 구술채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사진과 영상은 가장 중요한 기록수단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VR이나 AR, 메타버스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아카이빙 사업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집·생산되는 기록의 품질은 점차 높아지고, 이에 참여하는 인

력 또한 전문화되는 추세이다¹⁾.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료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시청자들도 영상아카이브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규모 대중음악아카이빙 프로젝트로 큰 화제를 모은 SBS 〈전설의무대-아카이브K〉(2021)와 이보다 2년 앞서 방영된 KBS〈모던코리아〉(2019~현재) 등이 잇달아 제작·방영되면서²⁾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 기록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이처럼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다.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등 사업 참여주체들은 관련사업 추진 결과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중화·백업체계, DB화 등은 대체로 미비하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있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황에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행 『공공기록물법』 관련 조항, 기록관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참고하는 관련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 1) 기록관리에서 AR이나 VR 등 실감콘텐츠 기술은 여전히 실험적으로 적용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증평기록관의 증평 지역 VR촬영이, 민간 부문에서는 ‘우토로를지키는모임’의 디지털역사지도가 대표적이다. 증평기록관에서는 2018년부터 충북 증평 지역 일대를 VR기술을 활용해 촬영해오고 있다 (<https://larchiveum.net/contents/vr/>). 2021년에는 ‘우토로를지키는모임’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마을인 우토로마을(일본 교토 일대)의 디지털역사지도가 제작되었다(<https://utoro.kin.or.kr/introduce>).
 - 2) SBS 〈전설의무대-아카이브K〉는 대중음악아카이빙 전문기업 (주)일공일팔이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가수, 음반제작자,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등 대중음악 관련 인물 207명은 인터뷰하여 촬영분량 175시간 이상을 수집하여 SBS에서 2021년 1월 방영한 방송프로그램이다. KBS의 〈모던코리아〉시리즈는 2019년 10월 첫 시즌이 방영된 이래 매년 시즌제로 방영되는 파운드푸티지(Found Footage, 국내에서는 ‘발굴영상’ 등으로 번역) 다큐멘터리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록관리가 여전히 행정문서 생산과 관리에 집중된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명기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다(『공공기록물법』 제39조). 그러나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9년 9월 26일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목표 및 과제수립을 위한 5차 간담회’에서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리더십’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언급된 ‘국가기록원 리더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록관리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지원, 민간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이 있다(국가기록원, 2019.9.20, 8). 2019년 일곱 차례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발표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시청각 기록을 비롯한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이 주요과제로서 포함되어 있다(국가기록원, 2020.1.15.).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시청각 기록과 관련한 ‘정책기구’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론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1980년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에서 『동영상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이하 유네스코 권고문)³⁾이 채택된 이후, ‘공공영상’ 아카이브⁴⁾의 개념과 수집범위, 역할, 기능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일

3) UNESCO (1980,10,27.). Recommendation pour la sauvegarde et la conservation des images en mouvement.

4) ‘공공영상’은 유네스코 등 해외 영상문화유산(Audiovisual Heritage) 관련 정책, 사업, 연구 등에서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을 비롯해 영화, 방송, 문화재, 문화예술, 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컬렉션 등 공중에 공개되는 시청각 유형 콘텐츠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문으로는 ‘Audiovisual Archives’이라는 일반명사로 표현되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공공적 차원의 구축과 활용의 의미를 부가해 ‘공공영상’아카이브로 번역된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공공영

부 선진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 관련 제도 및 전담기구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부재한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청각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내에 시청각 기록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 있는 정책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할 전문기구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2. 선행연구 분석

1)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및 국내 공공 부문 시청각기록 관련 연구

국내 기록학 분야에서 시청각기록물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201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즉, 문서 유형 공공기록관리 연구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된 연구주제로서, 초기에는 대체로 공공 부문에서 처리과(특

상' 및 '공공영상'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3대 이관체계에 따라 수집되는 시청각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기관명이 개칭되어 출범한 이후 국내 초기 기록학 연구는 공공기록 관리 제도화 방안이나 문서로 생산되는 공공기관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효율적으로 이관받아 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으로 생산되는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각 기관에서의 기록 생산 및 수집 절대량과는 관계없이 학술연구 주제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이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주한 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국가기록원 국가연구개발로 추진된 공공 부문 시청각기록관리 관련 연구

연구시기	연구명	연구책임자
2008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현종갑
2009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 개발	심재균
2011	시청각기록물 전자적 이관 및 관리 방안 연구 개발	전승식
2011	디지털화 영상기록물 자동복원기술 연구 개발	유병문
2011	디지털화 영상기록물 자동복원 병렬처리 구조설계 및 시스템 개발	유병문
2012	훼손된 디지털화 음성기록물 자동복원기술 연구개발	강홍구
2013	디지털시청각물 보존포맷 설계 및 변환기술 연구	유병문
2014	시청각기록물 자동 품질검사시스템 개발	안기옥
2015	시청각물 품질오류 검출 및 원인추적 분석처리 기술 연구	안기옥
2016	클라우드기반 시청각자료 통합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연구	윤영한
2017	시청각기록 음성신호의 텍스트(문자) 변환 연구	김재평
2017	디지털포렌식 기반 대용량 시청각기록 포맷변환절차 및 장기보존포맷 연구	성기범

2011년 『시청각기록물 전자적 이관 및 관리 방안 연구 개발』연구에

서는 전국에 산재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시청각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조사대상 43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기관에서 전자기록물 생산시스템에 미등록하고 있었으며, 미등록한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 시스템 혹은 별도 대장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청각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기록 최종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간 시청각기록물 관리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국내에 체계화되지 못한 공공 부문 시청각기록관리 이관 및 관리 체계와 관련된 당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진은 이후 발표한 학술논문에서 해당 연구를 통해 이후 국내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표준화된 시청각기록물의 활용성 증가로 인해 사용자 단말을 통한 동영상 기록물 검색, 접근 및 탐색이 용이하게 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권정아, 이제혁, 진승식, 2011, 141). 현재 국가기록원과 각 공공기관 기록관에 마련된 시청각기록물 관리 체계는 이 연구를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적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및 생산현황통보 누락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공공기관 처리과 및 기록관 현장에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시청각기록 시스템 및 이관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당시 연구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각 급 공공기관 홍보 관련 부서에서 생산되는 사진과 동영상(유튜브 콘텐츠 등)은 해당 기관 기록관에 이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술적(Technical) 차원의 연구를 몇 차례 더 시행했다. 대부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필름, 비디오, 음성자료 등으로 생산된 영구기록물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복원기술(국가기록원, 2011a; 2011b; 2012), 보존포맷 및 변환 기술

(국가기록원, 2013; 2017a; 2017b), 시청각기록물 품질검사(국가기록원, 2014; 2015)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시청각기록물 대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청각기록 통합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주제로 한 연구(국가기록원, 2016)를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개인 등 다양한 아카이브 구축 주체가 참여하는 환경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및 기술(Description)과 관련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연구명에는 ‘시청각기록물’ 내지는 ‘영상기록물’ 등으로 지칭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 현장 관계자와의 인터뷰나 기록물관리체계 및 시스템 연구 등은 국가기록원이나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환경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를 민간에서 생산되는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 기록 등의 관리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홍덕용(2012)은 당시까지 해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⁵⁾들을 바탕으로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러 선행연구 결과 도출된 26개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를 <맥락영역>, <정보영역>, <실물영역> 등 6개 영역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및 지자체 재직 기록연구사 3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시청각기록물 평가에서 필요한 요소를 도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평가요소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장 기초적인 1차 평가요

5) 이 연구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를 각 연구별로 정리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주요 해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 Schuurmsma, Rolf L (1974). Principles of Selection, Photographic Bulletin, 9.; Kula, Sam (1983). The Archival Appraisal of Moving Image: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Peterson, T. H (1984). Archival Principles and Records of the New Technology, American Archivist, 47.; M. L. Ritzenthaler (1984).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SAA Basic Manual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W.H.Leary (1991). Managing Audiovisual Arch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rbonneau, Normand (2005).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Archivaria, 59.

소는 주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청각기록물과 기술(Description)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메타데이터 항목 및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남영준·문정현(2010)의 연구는 타 유형과 구별되는 시청각기록물 기술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 단위 기관에서의 시청각기록물 기술 표준화에 집중한 연구이며, 각 분야에서 관리하는 도서·행정기록·유물 관련 기록물의 특수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한계가 있었다. 심보미·장운금(2018)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좀더 나아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화·방송영상관리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를 거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제언사항을 도출했다.

이처럼 국내 기록학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시청각 기록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 생산·이관을 통해 수집되는 행정기관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체로 이관이나 메타데이터에 의한 정보관리 및 평가, 기술적 차원의 품질관리,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할 실무적 차원의 연구들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시청각기록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미진한 상황이다. 현행 관련법의 한계나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공공표준 및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가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최효진(2018)은 2018년 국제 영상기록관리 연수프로그램 <INA Frame> 참가 경험을 토대로,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인프라 정비, 기관 또는 거버넌스 설계 등과 같은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여러 선결 과제 검토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위한 현행 관련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내고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모델을 제안하였지만, 현행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현황은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

2) 해외 시청각기록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의 원로 영상기록학자 에드몬슨(Ray Edmondson)⁶⁾은 1990년대 후반 일반 기록관과 구분되는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Edmondson, 1997; 1998). 에드몬슨은 일반 기록관과 구별되는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으로 ‘시청각기록물 영구보존(Preservation)’과 대국민 ‘접근성 보장(Providing Access)’이 모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즉, 일반 기록관에서는 국가 안보나 공익 등을 위해 수집된 일부 기록물이 영구보존되고 대외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공영상’아카이브는 공개를 전제한 컬렉션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두 기능이 동시에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접근성 보장’은 다시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정보 접근성 보장’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접근성 보장은 아날로그 매체이든 디지털 매체이든 수집되는 기록물을 이용자가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성은 시청 및 청취가 가능한 사진, 영상, 음성자료 등의 식별정보, 주제, 저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일부 진행된

6) 에드몬슨(Ray Edmondson)은 호주 영화사서이자 영상아카이브 분야 대표적 연구자로, 초기 영상아카이브 학술적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에드몬슨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다음이 있다: Edmondson, Ray (2020). Back to the Future: A Reflection on Fundamentals. 10.1007/978-3-030-18441-4_21.; Edmondson, Ray (2020). Memory of the World: An Introduction. 10.1007/978-3-030-18441-4_2.; Edmondson, Ray (2015). Memory of the World: the Cinema Challenge. *Journal of Film Preservation*, 15-19. Edmondson, Ray (2011).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The quest for identity*. PhD Thesis, University of Canberra.

바 있는 시청각기록물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모델 연구는 이에 해당한다. 에드몬슨은 이 외에도 ‘공공영상’아카이브가 기존 기록관의 기록관리 원칙인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중 원칙’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물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무상으로 기록물 이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 등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기존의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과 다른 점을 설명한 바 있다⁷⁾.

오스트리아 법학자 코플러(Birgit Kofler)는 1991년 영상아카이브 제도와 관련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인 그의 연구 『영상아카이브와 관련된 법적 문제』⁸⁾에서 ‘공공영상’아카이브가 독립성 있는 기구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국립도서관·국립박물관·국가기록원 등의 역할과 동등한 문화적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⁹⁾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영상’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기관 운영지원, 수집·보존, 복원, 활용(공개 및 복제 등) 단계에 따른 아카이브 기능에 따라 정리한 바 있다(최효진, 2012, 79).

국내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5조 의무제출 관련 조항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를 의무제출받아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¹⁰⁾)의 회원기관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공공영상’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시네마테크에서의 영화 상영, 한국영화박물관 전시

7) 세 기관과 비교되는 ‘공공영상’아카이브의 특징은 에드몬슨의 저서에서 다음 표 참조 : Comparative table: audiovisual archives, general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Edmonson, Ray. (2016). Audiovisual Archiving -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85.

8)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9) They(audiovisual archives) should be seen as neutral, officially recognized preservation institutions equal in cultural importance to national libraries, national museums, and national archives and not as near supplier of services to TV or broadcast stations or to film production studios (Kofler, 1997, 46).

10) Fédération International du Film

및 교육프로그램, 영상도서관 서비스, 유튜브나 VOD플레이어 등을 통한 디지털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출을 통해 수집되는 영화작품 보존(Preservation) 중심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백옥인은 자유 소프트웨어 철학을 주창한 레이먼드(Eric Raymond, 2015)의 ‘성당과 시장’ 개념을 빌려 한국영상자료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아카이빙 활동을 개방성이 부족한 ‘성당(Cathedral)모델’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여러 공공기관에서 ‘나름대로 과거의 영상물이나 음원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중의 참여와 활용을 확대해 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유튜브’와 비교되는 이러한 모델은 제한된 참여자에 의한 딱딱한 ‘성당 모델’이며, 유튜브 등의 개방적인 플랫폼은 ‘시장(Bazar)모델’에 가깝다고 비유했다. 그는 공공 아카이브에서는 성당처럼 콘텐츠를 잘 정리해놓은 다음 시장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 작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대중의 참여와 활용에 활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21, 212-213).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은 어떤 법제도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까? 즉 국가적 차원에서 영구보존되어야 할 시청각기록의 범위를 제안하고 해당 기록을 영구보존 및 복원하는 데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학술연구·창작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역할은 누가 맡아야 할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관리와 관련한 역할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국내에 필요한 ‘공공영상’아카이브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부재한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3.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수집 현황

‘공공영상’아카이브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2020 국가기록백서』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 수집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0년도 백서와 기관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목적은 현행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록원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시청각 유형 기록수집 및 관리 현황을 어떠한 수준으로 대국민 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 시청각 기록 수집 및 관리의 법적 근거인 『공공기록물법』 관련 조항과 백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공표준과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기록원 외에도 현재 국내에 설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2018년 개원)과 서울기록원(2019년 개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기록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의 영구보존 대상 시청각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국가기록원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이관된 시청각기록물이 문서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정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에 한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청각기록 수집현황 및 이를 토대로 한 관련 정책 연구는 후속 논의로 남겨두고자 한다.

1) 영구보존 대상 시청각 기록 이관현황

국가기록원 행정기록지원과, 특수기록지원과, 보존인수과 등에서는 매년 말 각급 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조사하고 중요 기록물을 선

별하여 『공공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한다. 2020년에 이관된 시청각기록물은 37군데 중앙행정기관, 80군데 특별행정기관, 1군데 군기관 등 전체 118군데 기관에서 549점으로, 모두 비전자기록물이다. 기관당 평균 수집량을 계산하면 1개 기관당 4.65점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비전자 문서기록물 수집량이 8만여 권인 점에 비교하면, 시청각기록물의 수집량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분량이 매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고 있다.

〈표 2〉 2020년 기록물 이관현황

유형	합계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군기관
기관 수	118	44	98	1
합계	80,668	37,884	36,822	5,962
문서(권)	80,000	37,388	36,798	5,814
시청각(점)	549	433	10	106
행정박물(점)	92	36	14	42
비밀(권)	27	27		

※ 출처: 『2020 국가기록백서』, 150쪽.

전년도 시청각기록물 수집량과 비교해보면, 매년 수집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편차가 큰 편이다. 『2019 국가기록백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이관기관 143군데(중앙행정기관 38군데, 특별행정기관 105군데) 행정기관에서 3,266권을 수집했다(국가기록원, 2020, 137). 이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 수집량은 1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한 이관사업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문서기록 수집량은 2019년도 7만 7천여 권, 2020년도 8만여 점 등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시청각기록물의 수집량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2개년에 걸친 이관량이 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은 국가기록원 측에서 각 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소장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관 기록물이 비전자기록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기록물은 정기이관에 따른 보존연한 30년 이상 기록물로서, 종이문서나 종이사진, 필름, 비디오 및 카세트테이프 등 대부분 비전자 기록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에는 감사원 등 49개 기관대표 홈페이지에서 1.35TB 용량의 웹 기록물, 2020년도에는 국가보훈처 등 50개 기관의 468GB이상 되는 용량의 웹 기록물을 원격수집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¹¹⁾, 국가기록원에서 매년 추진되는 공공기록물 수집 사업에는 최근에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록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이며 2010년대부터는 많은 기관에서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관하는 중요 시청각기록물이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적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매년 이루어지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관에서 시청각기록 수집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이전의 각 기관 기록관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의 시청각기록물 관리가 문서기록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시청각기록물을 집계하는 단위가 문서기록을 관리하는 단위인 ‘점’, ‘철’, ‘권’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에 이관

11) 2019년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49개)의 대표 홈페이지를 웹 수집 로봇(Crawler)을 이용하여 총 1.35TB(URL 8,118,795개)를 수집하였다(국가기록원, 2020, 137).

2020년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등 50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총 468,172MB(URL 3,206,192 페이지)를 웹 수집 로봇을 이용해 원격으로 수집하였다(국가기록원, 2020, 150).

된 시청각기록물을 집계할 때 2019년도에는 ‘권’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2020년도에는 ‘점’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다. 매년 집계 단위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지만, 두 단위 모두 문서기록물을 집계하던 단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매년 발간되는 백서의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수집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시청각기록물에는 사진, 필름, 음성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기록이나 행정박물과 수집량 비교를 해야 하더라도, 음성 및 동영상과 같이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 기록물을 ‘권’이나 ‘점’으로 집계하는 방식은 기록물의 특수성을 전제하지 않은 집계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종이사진 1장을 최소단위로 보는지, 여러 장의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 1권을 최소단위로 보는지 매년 발간되는 통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롤’(필름)이나 ‘개’로 집계될 수 있는 테이프 형태의 기록물이라도 수집된 음성/영상자료의 전체 시간을 ‘분’ 또는 ‘시간’ 단위로 집계하여 시청각기록물로 수집되는 중요기록물의 전체 수집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국가기록백서』에는 비전자 보존기록물 현황이 세부 유형별 통계로 제시되어 있다. 문서는 ‘문서류’, ‘카드’, ‘간행물’, ‘도면류’ 등 세부 유형을 제시했으나, 시청각기록은 세부유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장량을 집계하는 단위는 ‘점’ 또는 ‘철’로서 문서기록의 단위를 그대로 쓴다.¹²⁾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현황이 백서와 약간 다른 수치가 소개되어 있는데,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34만 5천여 철을 소장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¹³⁾ 정확한 단위를 사용하여 소장기록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유형별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예산, 인력 마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12)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소장량은 547만여 점, 36만 4천여 철이다(국가기록원, 2021, 341).

1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전체 보유현황(생산연도별) <https://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Recode.do>

특히 시청각유형 기록물의 경우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 등 각각의 세부 유형의 단위로 집계하여야 유형에 맞는 컬렉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해외 및 민간 수집 대상 시청각기록물 수집 현황

한편,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시청각기록물 가운데 해외나 민간 영역에서 수집된 기록물은 수집 시기나 유형에 따라서 사진, 음성, 동영상 수집 기록물의 집계 단위가 다양하다. 민간기록물, 구술기록물, 해외기록물 수집현황의 통계상 공통점은 수집 형태가 디지털 사본인 경우에도, 디지털 용량을 집계하는 단위(MB, GB, TB 등)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범주의 기록물 수집 시기는 모두 2007년 이후로, 수집시기나 방법에 따라 디지털 사본 수집 혹은 생산(구술채록)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데이터 용량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수집되는 시청각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해외기록물 수집 결과 가운데 디지털 사진을 수집한 2008년과 2009년에는 해당 사진데이터가 수록된 DVD의 개수를 표기하기도 하였다.¹⁴⁾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를 의미(『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하는 말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등이 수집 대상이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민간기록물 중 시청각기록물은 183,621점¹⁵⁾인 것으로 추정된다(부록1). 한편, 국가기록원은 기증이

14)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및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https://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나 구입, 사본수집 등이 어렵거나 기 수집된 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 572점, 직접 생산한 채록물 160점을 보유하고 있다. 즉, ‘민간기록물’은 ‘점’으로, ‘구술기록물’은 ‘건’으로 집계되며, 사진, 음성, 영상 등 세부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점’ 또는 ‘건’으로 표기한다.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정확한 단위로 집계를 해야 수집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구술기록물의 경우 ‘한국해운 60년 구술자료 21건(2015년수집)’의 경우 21명의 인터뷰이 녹음 혹은 녹화본이라는 의미인지, 21개 오디오 혹은 영상 파일을 수집했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표 3〉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구술기록물/해외기록물 집계단위 예시

구분	단위	표기 예시		
		내용	수집시기	수량
민간기록물	점	YWCA 회의록 및 사진앨범	2011	255점
		故 최민식 작가 사진필름 및 인화사진 등	2013	15,000점
		故최민식 작가 추가기증 필름류	2017	2,000점
		故최민식 작가 사진 원본 필름류	2018	5,000점
구술기록물	건	(수집)한국해운 60년 구술자료	2015	21건
		(채록)주요 민간기록물 기증자 구술채록	2015	5건
		(채록)새마을운동 주요 관계자 구술채록	2016	5건
		(채록)민간기록(공주 유구 북한실향민) 구술채록	2017	5건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통계에서 예시 발췌(<https://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한편,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개인,

15)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기록물 수집결과 중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기재된 기록물 수집내역만 발췌한 결과이다. 해당 통계에 소개된 기록물 군 가운데 사진, 음성, 영상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수집량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해외기록물’로 2007년부터 수집하고 있다. 주요 수집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공공기관이나 해외 소재 민간단체·개인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산하여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개인에 발송한 기록물’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 변화과정 등에 관련된 기록물’ 등이다(『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에 수집된 시청각 유형 해외기록물은 사진 138,351점(부록3-1), 음성 611점, 영상 1,087점(부록3-2)이다. ‘해외기록물’은 세부 유형 및 수집시기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집계된다.

〈표 4〉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집계단위 예시

세부유형별 단위	표기 예시		
	내용	수집 시기	수량
(사진) 점, 매, 판	일본 재일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사진(DVD 18장)	2008	65,000점
	일본 재일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사진(DVD 23여장)	2009	36,542매
	일본 故 하야시 에이다이 기증 조선인 강제연행 문서·사진	2018	6,432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사진	2018	64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IWG-일본전범 관련 사진, 미해군6·25전쟁 관련 사진	2019	1280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6·25참전군인 루퍼드 넬슨 칼라 슬라이드(원본)	2019	240판
(음성) 점, 개, 판 *일부 분량, 매체 개수 병기	유엔 유엔시청각도서관 소장 1953~1963년 한국 관련 오디오파일	2010	50점
	유엔아카이브 소장 UNKRA 관련 오디오(LP판) 기록물	2018	174판
	러시아 국립음성문서보존소 일본 731부대 재판 음성 기록 파일(분량: 약 22시간)	2019	18개
	러시아 국립음성문서보존소 북한주요인사 연설, 축사 음성기록 (분량: 9시간 35분 5초)	2020	33점

세부유형별 단위	표기 예시		
	내용	수집 시기	수량
(영상) 점 *일부 분량, 매체 개수 병기	일본 외교사료관 한일관계자료문서 18,410매, 재일 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영상(필름 5점)	2007	109점
	유엔 유엔시청각도서관 소장 1950~80년 비디오 자료 (베타테이프 18개)	2008	94점
	일본 NHK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영상기록 (124초)	2012	1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6.25전쟁 전후 시기 등 영상(원산, 볼모고지 전투, 맥아더·하지·클라크·닉슨 등 방한, 판문점 포로교환, 전후원조 등, 영상길이: 886분)	2016	94점
	미국 서재필기념재단 '3·1운동100주년기념행사' 관련 기록 영상	2019	1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일본군'위안부' 영상, 6.25 전쟁전후 영상	2020	36점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통계에서 예시 발췌(<https://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사진은 대체로 '점'과 '매'로 표기되는데 2019년 슬라이드로 수집한 경우 '판'으로 집계한 경우도 있다. 사진기록물의 경우 관련 문서기록물과 같이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기록물과 같이 집계를 하면(예: 2017년 일본 故 하야시 에이다이 기증 조선인 강제연행 문서·사진 등) 수집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영상과 음성은 대체로 '점'으로 집계하지만, 기록물 설명에는 '분', '시간', '초' 등도 수집된 기록물의 분량이나 수집한 아날로그 매체의 개수도 같이 소개되어 있다. 해외 수집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매년 수집되는 수량이 제한적이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본 논문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향후 해외 수집 시청각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일단 수집된 이후에는 다른 입수경로의 시청각 기록물과 일관된 관리방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집계 단위를 표준화하되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기록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한 단위 입력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수집 현황

공공기관이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은 각급 공공기관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관 등으로 이어지는 ‘이관체제’에 의해 국가기록원에 수집되는 반면,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방송·영상콘텐츠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영상자료원,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조에 의해 수집된다(『공공기록물법』 제46조 3항과 4항).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의무제출제도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화 의무제출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은 영화, 즉, 극장이나 OTT플랫폼 등에서 상영·공개 가능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를 보완할 영화 수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수집된 국가기록원의 영화기록물을 보면, 2013년도까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복제 이관된 이른바 ‘고전영화’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인인증자와 영화배급사의 소장기록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기록물을 수집해오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는 각 지상파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선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기획 수집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 이와 같은 수집정책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수집된 수집량은 영화기록물 1,277점, 방송기록물 9,278점이다(부록4).

이러한 수집방법은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영상자료원 및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생산되는 영화나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수에 비해 지금까지 국

가기록원에 수집된 방송·영상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56). 『영화·비디오법』 제35조¹⁶⁾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의무제출 받은 영화는 1,021편이고, 2020년 KBS 1TV와 2TV의 2020년 연간 방송시간 16,261.5시간(2021 『방송산업 실태조사』 기준, 분 단위 통계를 시간으로 환산)인 것에 비교하면 국가기록원이 국가적 보존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4. 공공 시청각기록물 관련 법률 조항과 공공표준 분석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분석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이 이처럼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또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각 급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물이 생산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물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살펴보고, 쟁점이 되는 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대상이 되는 주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을 생산한 경우, 녹취록을 함께 생산

16) 『영화·비디오법』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공공기관의 회의 외에도 ‘시청각기록물’과 ‘동영상기록물’로 생산해야 하는 대상이 좀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5〉 공공기관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와 관련된 법을 조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1항 ‘시청각기록물’ 생산대상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2항 ‘동영상기록물’ 생산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 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7.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상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11.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 2. 제1항제3호 중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 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 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4. 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 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회의 녹음기록/녹취록/속기록 생산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세부 시청각유형 가운데 ‘동영상’으로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 국가 장의행사, 국제행사, 체육행사, 국제회의, 대규모 사업 및 공사 등은 반드시 ‘동영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항목을 특히 명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명기된 11개 항목 모두 사실상 ‘동영상’ 생산이 필요한 사항이며, 해당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청각기록물’ 및 ‘동영상기록물’로 생산되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시행령에서와 같이 특정 항목을 명기해야 해당 대상에만 한정하는 점도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즉, 최근 ‘유튜브’에 개설된 공공기관의 채널에서 각 기관 행사 영상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와 사업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담당자의 휴대폰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률 시행령에 시청각기록물 및 동영상 기록물로 생산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회의 가운데 녹음기록 및 녹취록을 생산하는 경우, 현행 조항에 따라 음성자료와 문서 형태의 녹취록만 생산될 소지가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나 개별법 및 특별법 위원회·심의회, 지자체 및 지자체 교육감 참석회의 등 공공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담기는 회의의 경우 음성자료보다는 ‘동영상기록물’로 생산하면, 당시 회의 분위기, 회의참석자의 제스처와 의사전달 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회의의 성격이나 참석자들의 동의 여부, 생산기관의 사업에서 해당 회의가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 등에 따라 회의 기록의 유형을 음성자료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공공기록물법』 제23조에 명기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시기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즉,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만약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이라면 이관시기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6조).

앞서 2019년과 2020년 발간된 『국가기록백서』를 통해 2019년도에는 3,200여 권, 2020년도에는 549점이 이관되었음을 확인했다. 국가기록원 외에도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된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의 이관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이 적절한 시기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 명기된 이관시기가 적절하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에 명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된 기록물은 각 공공기관에서의 물리적인 보존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아날로그 매체는 물론이고 디지털 매체로 보존되는 시청각기록물은 매체의 종류와 보존 상태를 기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정에 보급된 비디오매체인 VHS테이프를 포함한 마그네틱테이프는 재생장비를 비롯해 해당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부품 부족 문제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긴급 디지털화 작업을 서두르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가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소장 중인 마그네틱 테이프 매체를 전량 디지털화하고 있다.¹⁷⁾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 이하의 ‘최근 기록물’은 일정 기간 각 기관에서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디지털화를 하지 않는 이상 VHS테이프, 베타테이프, 6mm테이프 등 1990년대 이후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아날로그 매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록물 생산시기나 보존기간에 따른 평가가 아닌 물리적 매체의 유형과 보존상태, 주제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법률과 시행령에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제46조 3항과 4항은 국가기록원의 영화·방송콘텐츠 수집 기능을 명시한 조항으로, 국가기록원이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공조를 통해 기획수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조항에 명기된 국가기록원의 수집 대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수집된 작품이나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조항과 항목은 『공공기록물법』의 ‘민간 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와 관련한 규정으로서, 국가기록원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공공기록물 수집·관리의 결락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17) 프랑스 방송통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방송아카이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는 1999년 PSN(Plan de Sauvegarde et de Numérisation)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모든 매체(필름, 헬리컬비디오, 베타테이프, 디스크 등)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텔레비전 33만 5천 시간 분량, 라디오 50만 시간 분량의 방송기록물을 디지털화했다. INA 측은 초기 예산 1,000만 여 유로(2001년 유로 환율 기준 한화 1조 1,640억 원), 매년 457만 유로 예산을 수립하였고, 2019년까지 프랑스 정부와의 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을 통한 특별예산을 확보했다(<https://www.csa.fr/Cles-de-l-audiovisuel/Connaitre/Histoire-de-l-audiovisuel/La-sauvegarde-de-la-memoire-audiovisuelle-par-l-INA>).

또한, 호주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호주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와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NFSA) 소장 시청각기록 디지털화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NFSA 소장한 24만 건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화하는데 향후 5년간 4,190만 호주 달러(한화 36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Stewart, Selby, 2021.12.3).

즉,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는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민간기록물’로 분류되어, 국가기록원이 각 급 공공기관에서 이관받아 수집하는 공공기록물 외에 국가적 차원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영화작품 및 방송프로그램이 수집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방송·영상콘텐츠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공기록·민간기록의 이분법적 분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영화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극장이나 플랫폼 등에 상영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상영(공개)등급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에는 일정한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진입규제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이 가능한 방송사업자¹⁸⁾에 한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수 있다.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는 생산되고 공중(Public)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공공성을 획득한 콘텐츠로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현재의 ‘공공기록물’의 법적 정의, 즉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에서 더 나아가 좀더 포괄적인 공공기록물 정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 콘텐츠 보호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에 상영·공개된 영화작품에 한해

18) 2020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에 의해 방송사업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69개사이며, 방통위 ‘승인’ 대상 종합편성 채널 4개사, 보도전문채널 2개사(YTN, 연합뉴스TV),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케이블채널 등 방송산업 실태조사 대상 방송사업자는 399개사이다. 이 중에서 국가기록원은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 4개사(KBS, MBC, EBS, SBS)와만 수집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보도전문채널인 YTN이나 연합뉴스TV는 법적으로는 협의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19) 미디어의 공개성과 공공성의 관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개성 차원에서 ‘미디어공공성’이란 미디어를 통해 표상되고 공개되는 내용과 과정, 즉 미디어의 수용자인 ‘공중’에 노출되고 알려지는 대상과 방법을 말한다.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사상, 집단들을 드러내고 이를 공개적인 검증과 비판의 과정에 노출하는 가시성이나 공개성과 관련된다. 미디어는 사적인 것들을 공적인 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는 매개자이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비교와 검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밀스럽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공적인 대상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이영주, 박은희, 김경환, 2006.9, 86).

의무제출을 받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46조 3항과 4항은 국가기록원이 한국영상자료원 및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행 조항의 표현에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양 기관 ‘협약’에 의해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수집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국가가 반드시 수집해야 할 영화·방송·영상 콘텐츠의 기준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대상에 대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84조에는 ‘주요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조사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송부 기간만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영화·방송·영상 수집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한국영상자료원, 방송사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장르, 유형의 콘텐츠를 국가기록원에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국고지원을 받은 콘텐츠²⁰⁾ 등 재원이나 주제·장르 등

20) 호주 영상위원회는 정부가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할 때, 선정 단계에서 제작지원금(Production Investment Agreement 등) 일부 혹은 전부 투자된 작품을 호주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NFSA)에 정해진 포맷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고지한다. 또한, 납본된 작품은 국가적 차원의 보존 및 공공활용에 한해 사용된다는 점 등 저작권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 141-142). 국가기록원은 2013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2011~2012년에 제작된 방송발전기금 지원작 중 다규와 교양 프로그램 일부(215편)를 수집하였고, 2014년에는 2009~2013 양방향프로그램 국고지원작 97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집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매년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제작지원 예산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약 5만여 편(회차 기준)이고,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등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에서 방영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0.5. 2019 회계연도 결산 개요(3-2):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p.17). 2019년도 국가기록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수집량은 MBC와 SBS, 한국탐사저널리즘 등으로부터 관련 방송물 75편에 불과하다(국가기록원, 2021.6.30, 24).

의 공공성에 따라 수집 의무대상임을 관련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방송·영상 기록물 수집에 있어 공조 대상인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방송·영상기록물의 수집처를 보면 KBS·MBC·SBS·EBS 등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전국 단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이다. 그러나 『방송법』 제9조에 의해 진입규제를 받는 지상파 방송사는 앞서 언급한 4개 방송사 외에도 공공채널, 지역민방 등 69개사로(『2021 방송산업실태조사』 기준), 이 방송사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를 논의하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록물법』에 언급된 지상파 방송사 외에도 다양한 방송·영상 제작자들이 만든 콘텐츠 가운데 ‘국가적 보존가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2020국가기록백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률이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2019년 법률에 반영하지 못했던 과제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입안하여 부처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국무회의, 국회제출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2020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내실화,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영구기록물관리 기록관리 개선 등에 관한 조항이었지만(국가기록원, 2021, 38), 이 절에서 살펴본 시청각기록물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생산 및 이관체계, 국가적 차원의 영화·방송·영상 콘텐츠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정책 공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절에서 논의한 관련 조항 개정 방향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시청각기록물 수집 및 관리 관련 공공표준 분석

‘기록관리 표준’이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제정·시행하는 표준을 말한다.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 168호, 2020.3.24.개정)』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표준’과 ‘공공표준’으로 구분된다²¹⁾. ‘국가표준’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고시하는 표준을 말하며, ‘공공표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표준을 분석해보면, 국가표준 가운데 시청각기록물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표준은 별도로 없고, 공공표준 중에서는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NAK 22:2009(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v2.0)』 등 4개 표준이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의 표준 제정 의무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각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현행 공공표준은 표준이 제정된 시기만 살펴봐도 현행 디지털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NAK 22:2009(v2.0)』은 2009년 제정된 표준으로 이후 10년이 지나 디지털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시청각기록물 관리 환경 또한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21)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 168호, 2020.3.24.개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원내표준’은 중장기 표준화 전략에 따라 공공표준으로 상향·통합,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Standard), 지침(Guide),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원내표준(Archives) 구분 없이, 2017년부터 새로운 ‘공공표준 번호’가 부여되었다.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표준에 따르면, 등록 시점과 등록번호 표기와 관련된 방식에서, 공공기록물 생산 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생산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록물 보호 ‘케이스’에 표기해야 한다(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NAK 22:2009(v2.0), 4). 이는 과거 DVD나 CD 등으로 디지털 사진 및 영상을 보관하던 방식이 반영된 표준으로서 대용량 외장하드나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사진 및 영상 관리에서 불필요한 과정이다.²²⁾ 이처럼 국가기록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공공표준’은 현재 시청각기록물 생산 환경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표준들로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 개정된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은 디지털 동영상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디지털화 포맷을 제시한다. 특히 35mm, 16mm 영화필름 스캔본과 비디오테이프 보존포맷을 무손실압축 ‘MKV(영상코덱 FFV1)’ 과 손실압축 ‘MP4’로 하도록 표준에 제시되어 있다(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 22). ‘손실압축

22) 2016년 국가기록원 연구개발 사업 『클라우드기반 시청각자료 통합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는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상관리시스템 보유현황과 관리, 이관 측면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각 기관의 시청각기록물은 대부분 기관장 동정 및 기관의 주요행사, 기관의 홍보용, 기관 내부 교육용 등을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장 강연에서 오디오도 생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기관들은 기관장 동정 및 기관의 주요행사는 사진 생산이 많으며 직접 기관에서 생산하고, 기관의 홍보용이나 교육용은 외주로 요청하여 CD나 DVD 형태로 납품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생산되는 사진은 모두 디지털(전자 형태)이고 동영상의 역시 일부 방송용 테이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디지털(전자 형태)로 생산됨. 그에 따라 이전 아날로그 생산보다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이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기관들은 시청각기록물 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생산시스템에서의 등록 문제(51.76%)와 저장공간(30.59%)이며, 이관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 내 관리 항목의 복잡성(55.56%)과 자료(영상) 전송 방법이 문제점(36.11%)이라고 답변하였다. 2016년 연구에서 이미 각급 공공기관에서 CD와 DVD는 외주 납품용으로만 사용됨이 밝혀졌으며, 대용량 사진, 녹음기록, 영상 데이터 등록, 저장, 이관에서 현재의 시스템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 조사되었다(국가기록원, 2016, 19-22).

MP4(영상코덱 H.264 MPEG-4 AVC)'은 국내 방송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동영상 아카이빙에서 채택하는 포맷이지만, '무손실 압축 MKV(영상코덱 FFV1)'은 재검토가 필요한 포맷이다. MKV는 영화나 방송영상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포맷이며, 상용화된 영상편집장비²³⁾ 중에서 MKV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인코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현행 표준에 표시된 영상코덱 FFV1을 지원하는 아카이빙 장비와 제품이 매우 부족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손실 압축 포맷으로 전부 변환해야 한다. 영상아카이빙의 경험이 가장 많은 조직인 방송사들은 보존포맷으로 Mpeg2와 H.264(AVC) 계열의 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 보존 포맷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해 많은 기관에서 IMF(Interoperable Master Format)과 DPX포맷이 널리 사용된다²⁴⁾.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분석 없이 '무손실압축 MKV(영상코덱 FFV1)'의 포맷을 채택한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1,871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대학 등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기준. 국가기록원, 2021.6.30., 47)에서 현행 디지털화 표준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 저장공간에 대한 비용은 물론 작업 시간, 인력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²⁵⁾. 현행 공공표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23) Apple Final Cut Pro 7, Final Cut X, Adobe Premiere CC, GV Edius, Avid Media Composer

24)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기술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전세계 시네마테크 등 16개 필름아카이빙 기관의 보존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Survey on Long-term Digital Storage and Preservation'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서 영화필름 아카이빙 보존포맷으로 14개 기관이 무압축 DPX 계열 포맷을 준용한다고 답했다(FIAF Technical Commission, 2019, 6).

25) 해당 표준이 입안예고된 이후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18년 11월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의견회신서'를 통해 이른바 'MKV보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해당 표준이 지향하는 최우선 목적은 '보존(Preservation)'으로 방송사의 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인 『디지털시청각물 보존포맷 설계 및 변환기술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영상기술제작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공공기록관리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관련 공공표준 현황

공공표준	내용	문제점
<p>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8:2021(v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류를 포함한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기록물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공통항목 제시 ■ 문서류 위주의 메타데이터 요소임을 밝히고 있지만, 시청각기록물도 공통항목은 준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음성, 동영상 등 시청각 기록 생산 방식에 맞는 생산자 정보 입력형식이 아님(p.11~18) ■ 촬영자, 편집자, 후반작업 담당자 등 작업 절차에 따른 생산자 기록방식이 필요. 해당기관 소속 생산자가 촬영, 편집할 수도 있지만 외부 업체가 생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매체 항목: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광매체, 반도체 저장매체, 음반, 필름, 종이, 기타 로 구분. 파일포맷명과 코덱 등과 관련한 항목 부재(p.46~47) ■ 크기: 디지털매체는 Bytes의 약자인 'B'로만 기재. 상위 단위인 GB, TB, PB등 필요 ■ '장', '쪽', '건' 등 문서 위주 단위만 있음. 영상이나 음성길이 등 시청각기록에 적합한 단위 부재 (p.48~50)
<p>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 (v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매체별 관리기준 (종이, 필름, 음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저장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수명이 2023년 전후하여 끝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긴급 디지털화 계획 수립 ■ 각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경고성 안내사항 부재 ■ 자기테이프보다는 전자기록물 보존장치인 대용량저장장치(테이프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설명 ■ 오디오/비디오 테이프는 오래된 매체일수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변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p.19)

“④ 파일포맷 및 압축방법은 표준으로 제정되었거나, 범용성이 높아 사실상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포맷과 압축방법을 제시한다. 다만, 이 표준에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포맷과 압축방법이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내·외 표준화단체 등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 15).

공공표준	내용	문제점
<p>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 시청각기록물 NAK 22:2009 (v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과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절차(등록-정리-기록관 이관) ■ 기록관의 시청각기록물 관리 절차(인수-보존-연구기록관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및 영상 디지털 생산 중심 워크플로우에 맞지 않는 절차 제시 ■ 생산 직전 첫 단계인 '등록'단계에서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록물 보호케이스'에 등록번호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음(p.5). ■ 대부분 디지털 기기로 대량 생산하여 일괄 관리하는 현재의 생산방식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임 ■ 테이프, 디스크 등 현재는 대부분 쓰지 않는 기록매체 관리 지침임
<p>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목적,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 확보 방안 ■ 디지털화 대상, 디지털화 세부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화 포맷 및 코덱 정보 부족 (p.21~22) ■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보존포맷 무손실 압축 'MKV'재검토 필요. HD급 영상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의 보존포맷은 MPEG-2, 이미 카메라에서 '손실압축'으로 생산된 이미지를 '무손실압축'으로 보존할 필요 없음. '무손실압축' 및 '손실압축'파일포맷 모두 명기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 둘 중 어느 포맷으로 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대부분 아날로그 비디오로 보관되는 SD급 영상은 이보다 더 낮은 포맷으로 보존 가능 ■ 1,871개 공공기관 기록관에서 현재와 같은 스펙의 디지털포맷을 유지하는 경우 보존비용 및 용량이 과도하게 부과

3) 시청각기록물 생산 및 관련 지침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표준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침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공통으로 참고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2020.12.)에는 공공기관에서 시청각기록물을 비롯해 일반적인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각 공공기관 처리과와 기록관은 이 지침을 각 기관에서 참고하도록 한다. 시청각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앞

서 살펴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명기된 대로 각 공공기관이 사진이나 영상, 음성자료로 생산해야 하는 대상을 목록으로 제시한다(국가기록원, 2020.12, 93).

해당 지침에 따르면, 처리과에서는 전년도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급 기록관에 통보해야 한다(국가기록원, 2020.12, 62). 생산현황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기부터 각급 기관의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법』개정에 따라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 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17년도 생산현황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했다. 이 연구는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생산현황을 분석한 연구로, 분석대상 기관의 91.7%인 44개 기관이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현황을 통보하였으며, 기록물의 특성상 문화재청·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 특정 기관에 생산이 집중된다. 그런데 조사 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 원인으로 기록물 건별 수량 또는 주제(철명)별로 묶어서 통보하는 등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박지태, 2018, 128-129).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시청각기록물이 일반 문서와 달리 등록이 지연되면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맥락을 잃을 수 있어 반드시 생산과 동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국가기록원, 2020.12, 93). 그러나 현행 지침에는 등록 요령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2019년도 발행된 『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요약 정보를 추

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 요약 정보는 녹음 또는 촬영 일자 등의 생산일자, 주요 내용,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성명 및 직위, 위치 정보 등이라고 안내되어 있다(국가기록원, 2019.3, 46).

한편, 현행 지침에는 현재 디지털 사진, 영상, 음성자료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번호 표기방법이나 매체 관리 방법이 이전의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안내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도 시청각기록물 별도 지침으로 공개된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지침』(2009)에서 비롯한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영상기록 생산 기본 원칙과 생산과정을 담은 지침인데, 2009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영상제작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2018년도의 공공표준에서 보존포맷이 무손실압축 'MKV(영상코덱 FFV1)'으로 준용한다는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 영상보존용 포맷으로서 MKV의 적절성을 떠나, 국가기록원이 공개하는 공공표준과 관련 지침이 일관성을 갖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생산된 영상기록은 별도의 백업 지침 없이 '보존용 스토리지'에 저장 관리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 침투 위험 등 여러 보안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표 7〉 공공기록관리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관련 지침

공공표준	내용	문제점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지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기록 생산 기본원칙 ■ 영상기록 생산 과정 ■ (기획 및 생산준비-촬영-생산내용-편집 및 관리-설명문 ■ (메타데이터)작성-태깅 및 인코딩-분류체계 설계-영상기록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국책사업에 초점을 둔 매우 일로 다양한 공공기관 활동 영상기록화에 적용 불가 ■ 보존관리 부문에서 '일정 수준(HD) 이상의 화질 권장'이라고만 명시. 정확한 스펙(최소화질, 오디오스펙, 비트 수 등 기준 없음) ■ 디지털화 영상 보존포맷인 'MKV'(NAK 26:2018(v2.0) 기준)가 아닌 MPEG-2로 보존하라고 명시 ■ 별도의 백업 지침 없이 '보존용 스토리지'에 저장 관리 하라고 되어 있어, 바이러스 침투 위험 등 보안 위험을 고려한 관리지침이 아님 ■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내용 부실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의 시청각기록관리 요령은 <표7>에서 살펴본 영상기록 관련 지침을 준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처리과에서 생산하는 시청각기록물을 DVD나 CD로 보관하지 않는데도, 2019년과 2020년의 지침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개되어 있다. 즉, ‘광디스크(CD, DVD, Blu-ray), 테이프 등 보존용 매체 및 보호케이스 등에 넣어 생산부서, 제목(내용), 생산일자, 기록물 형태, 수량 등 등록번호를 표기’하라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자파일’로 생산되는 유형에 대한 등록 및 관리지침은 안내되어 있지만(국가기록원, 2020.12, 96), ‘안정적인 장기보존’ 방식이 안내되어 있지는 않다. 전자기록의 장기간 보존 용도로 외장하드, SSD, USB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대용량 스토리지인 ‘NAS’와 ‘스토리지’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국가기록원, 2020.12, 98-99). 그러나 ‘NAS’와 ‘스토리지’ 모두²⁶⁾ 해킹 위협에 언제나 노출된 매체로서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NAS나 스토리지에 보관된 데이터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두 매체 모두 안정적인 보존 매체로 볼 수 없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중화 및 백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기록관에서의 시청각기록물 장기보존 전략의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 마련하여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공공 시청각기록물 관련 법률 및 공공표준 개정 방안

지금까지 국내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 수집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시청

26) NAS는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약자로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한 방식이다.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두 개념이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각기록물의 세부유형과 해당 기록물의 주제를 확인했고, 이러한 시청각기록물이 관리되는 방식은 시청각기록물의 특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존 문서관리 방식을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을 집계하는 단위도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점’, ‘개’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록물 소장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록물이 생산되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 관리지침과 매뉴얼, 그 상위에 공공표준과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에서 공공 부문 시청각기록물 관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할까? 또한, 공공 부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는 사진, 음성, 영상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표준과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른바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리더십’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법률과 공공표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먼저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은 현재 국내에서 기록관리 정책수립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해당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살펴보고 시청각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시청각 기록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기록물법』 외에도 『영화·비디오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조항을 앞서 검토한 만큼, 검토한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일부 신설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살펴본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기록물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나타난 ‘시청각기록물’ 및 ‘동영상기록물’ 생산대상과 회의록 관련 조항에서는 생산대상으로 명기된 항목을 단순화하되, 사진·음성·영상 기록 생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2항 ‘동영상기록물’ 생산의무가 있다고 항목화된 생산대상의 범위를 삭제하고, 해당 항목들(대통령 취임식, 국가장의행사, 국제행사, 체육행사 등 5개 항목)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1항 ‘시청각기록물’ 생산대상(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자 업무활동 외 11개 항목) 모두 사진, 음성, 영상기록으로 생산해야 함을 명기한다.

‘생산대상’보다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각 사업 시행 전후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한다는 모호한 내용이 시행령 조항으로 명기되어 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 1항). 같은 조 2항에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해야 할 요소(촬영개요, 시간별 세부사항, 설명문 등)가 명기되어 있다. 이처럼 사진, 음성자료 등 다른 시청각기록물 생산 과정에도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관련 기록물의 종류와 생산 및 등록방법 등을 더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시청각기록물로 생산되어야 할 회의를 기록해야 한다면,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 등 세부 유형에 따른 일정한 서식을 정해두고 공공기관이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도록 하거나 각 처리과에서 생산 단계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해당 조항은 이러한 시청각기록물 생산방법 및 세부 생산기록에 대한 조항을 사진, 음성, 영상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좀 더 구체화하여 개정해야 한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시청각기록물 이관 시기를 보존기간 30년 이상된 기록물에 한정하는 내용(『공공기록물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시청각기록물을 단순히 기록물 생산 시기와 보존연한에 따라 영구보존 필요성을 검토한다면, 이관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각 공공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청각기록물은 물리화학적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 종이 기록물에 비해 물리화학적 환경에 취약한 필름이나 비디오 등 아날로그 매체는 물론, 순간적인 멸실 위기에 언제나 노출된 디지털 사진 및 영상이 안정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존연한이 아닌 관리상태, 시청각 매체의 생산시기, 디지털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VHS테이프 등 마그네틱 비디오테이프는 세계 각국에서 2023-2025년 사이 전량 디지털화를 하는데 속도를 내고 정부차원의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살펴본 『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안정적인 보존 매체로 표기된 NAS나 스토리지 또한 해킹 위협이나 하드디스크 불량²⁷⁾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시스템 및 LTO테이프라이브리 등을 활용한 이중화 내지는 백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없이 보존연한 30년 이하의 사진이나 영상을 각 공공기관 기록관 서고나

27) 『기록물 관리지침』에 장기적인 저장매체로 소개된 NAS, 스토리지 등은 매체의 태생적 특성상 전기적 구동장치가 많고, 데이터 집적도가 상승하면 고장이 쉽게 날 수 있다. 클라우드 업체 BackBlaze의 테스트에 따르면, 하드드라이브의 연간고장발생률(Annual Failure Rate, AFR)은 시게이트(Seagate)사의 드라이브 1.5TB 용량의 경우 1년 고장률이 14%, 3TB 용량의 경우 10% 정도로 나타났다.

- Sande, Steve. 2014.1.21. *Backblaze stats show most/least reliable hard drives: Hitachi leads the pack with lowest annual failure rate*, <https://www.engadget.com/2014-01-21-backblaze-stats-show-most-least-reliable-hard-drives-hitachi-le.html>.

또 다른 업체 시게이트의 테스트에 따르면, 하드드라이브의 평균고장주기(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를 최소 11년에서 최대 110년(1년 2,400시간 구동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의 하드드라이브를 매일 24시간 구동한다고 하면, 하드디스크의 고장률은 더 클 것이다.

- Seagate, Hard disk drive reliability and MTBF / AFR, <https://www.seagate.com/kr/ko/support/kb/hard-disk-drive-reliability-and-mtbf-afr-174791en/>.

NAS·스토리지에 보관하지 않도록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23조에 매년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이관시기 검토 의무를 명기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시청각기록물관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구보존이 필요한 시청각기록물 조기 이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급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록물법』에서 영화·방송·영상 콘텐츠의 국가적 책임에 관한 법적 조항인 제46조 3항과 4항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와 공조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영화나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 등 공조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사실상 수집이 어려워지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를 국가기록원의 공조대상이 아닌, 영화나 방송·영상 콘텐츠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관리하는 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기관으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해당 기관의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협력 대상을 한국영상자료원이나 지상파 방송사에 한정하지 않고 『방송법』이나 『영화·비디오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 기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주체 등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 기관을 범주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공영상의 대상과 범주를 검토할 수 있는 (가칭)공공영상 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절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공공표준 주요내용 개정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시청각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공공표준과 지침, 매뉴얼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2009년 제정된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시청각기록물 NAK 22:2009(v2.0)』은 10년 이상 급격한 디지털 융합 환경의 변화상을 반영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D나 DVD로 관리하던 과거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른 ‘등록’ 방식에 따르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록물 케이스에 부착하여야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DSLR 카메라 등으로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를 기록하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등록 절차는 이행되기 어려운 표준으로 볼 수 있다. 처리과의 특정 업무 수행 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사진이나 영상 생산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해당 번호를 기록생산도구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안에서 파일명을 수정하거나 기록물 생산 직후 백업된 파일명을 해당 등록번호로 수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 (v3.0)』에는 국내에 산재한 1,800여 곳 공공기관에서 대체로 소장량이 많은 아날로그 매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더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해당 표준에는 종이, 필름, 음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저장매체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 관리 기준이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마그네틱 비디오테이프의 디지털화 작업 시급성 또한 각급 기록관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명기하고,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 기준이 소개되어야 한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적절한 매체 선택 기준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 해당 표준에는 자기테이프의 하위에 ‘대용량 저장장치(테이프 라이브러리)’와 자기디스크의

하위 매체로 ‘대용량저장장치(스토리지)’가 장기보존을 위한 매체로 소개하고 있다(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v3.0), 16-22). 마치 두 매체 중 적절한 매체를 기록관에서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데²⁸⁾, 테이프라이브리리와 스토리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의 예산, 규모, 이용자 수, 보존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층적 저장장치관리(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 HSM)²⁹⁾’를 구성하고 여러 매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 (v2.0)』에서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화 포맷 및 코덱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필름아카이브 기관과 국내 영화제

28) 해당 표준에는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자기테이프 요건’으로서 ① 자기테이프의 동작(전원 공급)이 24시간 365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오류발생에 대비한 자가진단 및 복구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속서 E’의 방법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대용량 저장장치인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v3.0), 18). 또한 같은 표준에서 자기디스크 설명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자기디스크 요건’으로 위와 같은 ①~③의 사항을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대용량 저장장치인 스토리지가 유일하다’는 동일한 표현이 명기되어 있다(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v3.0), 22). 이러한 모호한 내용으로 표준의 내용을 구성하면,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장기보존을 위한 기록매체로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29) ‘계층적저장장치(HSM: 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는 사용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비교적 고급 상위 스토리지에, 사용빈도가 낮은 데이터는 하위 스토리지에 자동적으로 보관해 스토리지 사용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해두고 이용자가 필요하면 언제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한다. 이 스토리지는 해당 스토리지에 접속된 이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스토리지’라고도 한다. 사용빈도가 낮고 장기보존용으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등에 보관하며, 이는 온라인 스토리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니어라인(2차) 스토리지’, ‘오프라인 스토리지’ 등으로 부른다. 조직의 규모에 따라 ‘온라인 스토리지-오프라인 스토리지’ 2개 계층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온라인 스토리지-니어라인 스토리지-오프라인 스토리지’ 3개 계층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 미국아키비스트협회 용어사전 ‘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hierarchical-storage-management.html>.

작사 및 배급사, 방송사·외주제작사 조직에서의 콘텐츠 생산포맷, 장기보존 포맷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디지털 시청각 기록물의 장기보존 포맷으로 적절한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8:2021(v2.2)』에는 시청각 기록물의 물리적 매체, 디지털 포맷, 내용정보 등 기록물 유형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표준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표준 내용 수정을 거쳐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지침』(2009)과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2020)의 개정을 해야 한다. 즉, 해당 지침에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메타데이터 기술·미디어 및 메타데이터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6. 시청각 기록 관리 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정책 리더십 제고

유네스코 권고문에서는 시청각 부문 아카이브 전문화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재원 면에서 ‘공적으로 인정된(officiellement reconnues)’ 아카이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해당 권고문에 따르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정책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언한다³⁰⁾. 한편, 국내법 『공공기록물법』 제9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로서 기록물 관리 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표준화 정책 수립 및 표준개발, 관련 통계 작성·관리 등³¹⁾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3장에서 시청각기록물

30) Furthermore,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and preserving the moving image heritage ...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In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21st session, Belgrade, 23 September to 28 October 1980, v. 1: Resolutions, 160).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4029.page=153>.

이관현황과 관련 통계 집계방식을 통해 기존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지침과 공공표준의 내용을 통해 사진, 음성, 영상, 더 세분화하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매체에 따른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매체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기록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에 산재한 여러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그리고 민간 영역의 여러 기록관리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른바 시청각기록물 관리 ‘정책기능’이 현재 공백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의 관련 조항 신설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법』 제9조)과 헌법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법』 제10조)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법』 제11조)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 각각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청각기록물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전국에 산재한 1,800여 곳 기록관의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공공기록물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일반적인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만, 물리적 매체 관리 및 정보접근성 강화 등 다른 유형 기록물관리 정책과 구별되는 시청

31) 『공공기록물법』 제9조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각기록물에 특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영국의 『1958년 공공기록물법(Public Records Act 1958)』의 사례는 국내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참고가 된다. 영국 『1958년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공공기록물 보존 장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³²⁾. 즉, 영국 공공기록관리 정책기관인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은 국가기록원 이외의 장소에서 기록물을 보관·보존하기 위한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갖춘 시설에 대해 공공기록물 보존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영화 제작사나 공·민영방송사가 제공하는 영상물은 영국영화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 BFI)의 전문 인프라와 관리 노하우에 의해 관리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 80). 영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기록물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한국영상자료원 등과 같이 시청각기록관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시청각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관련 표준 제정, 보급형 전자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록물법』 관련 조항 신설 혹은 특별법 제정 등에 따라 향후 국내에 신설될 전문기구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서두에서 제기한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리더십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공공표준 개정 외에 신설될 기구의 대안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현재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시청각기록물 및 영화·방송 수집 기능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기억을 담는 의미에서의 ‘공공영상’을 수집·관리

32) 4. Place of deposit of public records. (1)If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a place outside the Public Record Office affords suitable facilities for the safe-keeping and preservation of records and their inspection by the public he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records deposited in that place, appoint it as a place of deposit as respects any class of public records selected for permanent preservation under this Act.

- Public Records Act 195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Eliz2/6-7/51>.

및 공공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기구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반영된 ‘공공영상’ 등 다양한 영역의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하고 영구보존·공공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1) ‘공공영상’의 개념과 범주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 및 기능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카이브 수집대상인 ‘공공영상’의 개념과 범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상’이란 본 논문에서 주로 논의했던 공공기관이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이나 한국영상자료원이 의무납본을 받는 영화작품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의 콘텐츠 중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표현매체), 대중(公衆)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생산목적),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다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콘텐츠(내용)와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를 말한다. 즉, 본 논문에서 국가기록원 수집 대상으로 살펴본 특정 사진, 음성자료, 동영상 외에도 이를 재생하도록 하는 장비와 이에 대한 지식정보, 문헌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은 국가기록원이나 서울기록원·경남기록원에 이관되는 관리하는 시청각 공공기록물 외에도 영화,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도서, 문화재, 교육·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범주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국내 여러 법적 제도적 틀에서 생산되는 ‘공공영상’의 범주는 본 논문에서 주로 살펴본 『공공기록물법』을 비롯해 『영화·비디오법』,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박물관·미술관법』, 『도서관법』 등 다양한 제도 및 산업적 틀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정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한국연구재단 등 공적 재원을 통해 연구된 질적 연구자료 또한 ‘공

공영상'의 범주로서 논의될 수 있다. '공공영상'의 정의와 범주화 작업은 '공공영상'아카이브 설립에 앞서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여러 제도 및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영상'의 세부갈래를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국내 다양한 제도 및 산업 분야에서 논의되는 '공공영상'의 범주

분야	관련법 및 관할 국가기관	분야별 '공공영상' 세부갈래
영상 일체	『영상진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에 고정된 것
공공기록물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시청각 유형 공공기록'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사·공단·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사진, 영상, 음성 등
영화	『영화비디오법』 한국영상자료원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방송 영상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 주무부처의 허가·승인·등록 등을 거친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방송 영상콘텐츠 일체 웹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중에 공개된 콘텐츠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한국콘텐츠진흥원 『박물관법』 국립중앙박물관	공공기관 및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문화 예술	『문화예술진흥법』/『지역예술진흥법』 국립예술자료원,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극장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무형문화재 등 문화예술 관련 사진, 음성, 동영상자료 일체
도서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 공공 도서관 소장 '시청각 자료'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재로 등록·지정된 고전영화나 고전 만화자료, 영화방송 관련 송·수신 장비 등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관련 시청각 자료 일체
기타 교육 연구	한국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 연구소 등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받아 수행해온 학술특목사업의 결과물, 질적연구자료

〈표8〉에서 논의한 법률 중에서 『영상진흥기본법』은 정부가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물’은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 유형을 의미한다.³³⁾ 이 법은 2020년 9월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³⁴⁾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의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지칭하고, ‘연속적인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을 이용자가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매체와 결합된 콘텐츠’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17, 발의연월일 2020.9.8.)』 제2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환경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웹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Multi Channel Network,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과 조직한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중, 즉 네티즌이 이를 접했다면(최효진, 2018, 135) 이 또한 ‘공공영상’에 포함될 수

33)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3617. 제안일자 2020년 9월 8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심사중

있다. 즉,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스트리밍기술, 그리고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방송·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 연구 개발, 해외 진출 지원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공공영상’의 정의와 범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대한 산업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2)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기본원칙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주제 면에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 다양한 공동체를 반영하는 ‘공공영상’ 및 관련 장비,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국제적·국가적 표준을 준수하여 컬렉션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컬렉션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공공영상’은 수집·관리·공공서비스 등 업무기능 모든 측면에서 ‘역사의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to history)³⁵⁾’을 지향한다. 그리고 수집 차원에서는 수집 대상 콘텐츠의 공공 활용을 전제한 ‘큐레이션 기반 (Curatorially driven) 수집’을 통해 컬렉션 관리·활용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 수집의 방법 면에서는 ‘공공영상’에 해당하는 각 분야 산업관계자, 공공기관 등 규제 및 정책실무자, 관련 공동체 등과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수집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따라서, ‘공공영상’아카이브가 공공활용 대

35) 설명 책임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ccountability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ccountability.html>) 본 논의에서 말하는 ‘역사의 설명책임성’이란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수집·관리·활용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한국인의 역사문화 기록화에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상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되, 공공활용이 가능한 시점이나 활용 조건은 ‘수집네트워크’ 구성원인 콘텐츠 공급자들과의 개별 콘텐츠 단위 혹은 세부 컬렉션 단위 공공활용 관련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공공영상’수집위원회 운영

먼저, ‘공공영상’을 ‘영상납본제(Audiovisual Legal Deposit)’를 통해 망라적·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한다³⁶⁾. 영상납본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는 납본 대상이 되는 ‘공공영상’의 범위, 납본 의무가 있는 저작권자, 납본 비용, 납본을 받는 의무제출 기관(영화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국제영상 음성아카이브협회(IASA)는 영상납본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으로, 포괄성(Comprehensiveness, 수집범위), 예외없는 참여(No exemptions, 제출기관), 법적근거 및 강제성(Enforcement), 무대가성(No Payment), 납본을 통한 보존 및 공공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본 수량(Number of copies), 즉시성(Time of deposit, 납본시기), 납본거부 조건(Selection) 등

36) ‘영상납본제’는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네스코 등에서 권고하는 제도이다. 1980년 발표된 유네스코 권고문에 의하면 ‘영상납본제’는 각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국가영상(National Production)’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Systematically preserved)’ 데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9. To ensure that moving images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preserved,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measures whereby officially recognized archives are able to acquire for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any part or all of their country's national production. Such measures may include, for example, voluntary arrangements with the holders of rights for the deposit of moving images, acquisition of moving images by purchase or donation or the institution of mandatory deposit systems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systems should complement and coexist with existing archival arrangements relating to publicly owned moving images (...)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In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21st session, Belgrade, 23 September to 28 October 1980, v. 1: Resolutions, 15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4029.page=153>

을 권고한다.³⁷⁾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가칭)공공영상수집위원회’가 기관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위원은 정부 및 유관부처 의사결정권자와 유관 기억기관(도서관, 기록관 등)의 전문가들로 선임하되, 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단순 자문위원’이 아니라 ‘공공영상’ 수집기준 및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 수립, 보존정책 평가 등 실제 기관 기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급 공공기관, 한국영상자료원·영화제작사·공·민영 방송사 관계자 등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되,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이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공공영상’ 보호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플러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영상아카이브’가 TV나 방송사, 혹은 영화스튜디오 등 미디어 부문 사업자들의 지원기구(suppliers of services)가 아니라 국립도서관·박물관·기록관과 같은 문화기구로서 동등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³⁸⁾

다시 말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우리 사회 공론장 역할을 하기 위한 수집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봄스의 ‘기록유산’ 개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정 기록이 공공 아카이브에 영구히 보존될만한지 결정할 때, 사회적 데이터를 역사적 자료로 전환 시키는 구성적 행위(constitutive act)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사건의 다양한 연속성(continuum)을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

37) IASA의 영상납본제 주요 요건 및 기본 원칙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

38) 코플러는 그의 연구에서 각국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 각국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공공 영상아카이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되, 단순 협력(co-operation)이나 조정(co-ordination) 수준의 협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Kofler, 1997, 46).

시키는' 행위는 공공 아카이브의 전형적인 활동으로, 각각의 사회 집단이 공공 아카이브에 부여한 기능인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공공영상'으로 표현된 시대별 여론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장소·주제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꾸준히 공공의 의견과 활동을 동시대의 요구 및 기대와 비교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일부 시청각 기록 수집 한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영상'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내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집하기 어렵다. 봄스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동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산물로서, 행정, 과학, 언론, 경제 분야와 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즉, '기록유산 형성'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목적과 목표는 공통의 이해나 다른 연대에 의하여 형성되어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오항녕 역, 2005, 167-221).

4)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공공영상' 영구 보존 기능

유네스코 권고문 및 FIAF, IASA 등의 관련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역할은 수집된 '공공영상'의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입수된 콘텐츠를 영구보존 및 공공활용 하는 데 한해서만 사본을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중보존 및 분산보존³⁹⁾을 원칙으로 하는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역할에

39) 『공공기록물법』 제21조는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원칙을 명시한다.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 이러한 범위 안에서만 사본을 제작하며, 정해진 활용처(방문열람, 온라인 카탈로그 업로드용 등)에서의 활용에 한해서만 사본을 제작한다. ‘공공영상’ 수집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공공활용 개시 시점을 정한다. 또한, 상업콘텐츠의 경우, 공공활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아카이브가 보존·공공활용 목적에 따른 사본제작이 가능하도록 비암호화된 버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카이브 영구보존은 일반적으로 두 곳의 데이터센터, 한 곳의 오프라인 수장고 등 3곳 이상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NFSA)는 3중 보존 체계,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아카이브 Meemoo⁴⁰⁾는 클라우드 포함 4중 보존 체계를 갖추었다.⁴¹⁾ 즉 해외 공공영상아카이브는 대부분 입수한 콘텐츠의 이중보존·분산보존 정책을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신설될 ‘공공영상’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이중보존·분산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1개 원본 콘텐츠를 입수하면, 보존·활용·백업용 3개 사본을 자동 생성하여 관리하고, ‘공공활용’플랫폼에서의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해상도 파일과 메자닌(Mezzanine)⁴²⁾ 파일 생성을 자동화하여 관리 대상 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한편, 국·공립 해외 많은 기관이 소장한 아날로그 매체를 디지털화

40) 벨기에는 3개 지역(플란데런 지역, 왈롱 지역, 브뤼셀 수도권 지역)이 4개 언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프랑스어 이중지역)를 쓰는 국가이다.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Belgium) 하위에 지역에 따라 3개 지역정부와 3개 공동체 정부(플란데르어 공동체(네덜란드어권), 프랑스어 공동체(프랑스어권), 독일어 공동체(독일어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Meemoo는 3개 공동체 정부 가운데 네덜란드어권 공동체 정부의 아카이브 기관이다.

41) 해외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련한 정책 등은 최효진 (202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및 활용방향. 81-124쪽 참조.

42) 4K나 8K급 초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시각적 손실이 없는 형태로 압축하여 영상제작 및 상영/방영/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활용 포맷. 영국 BFI, 미국 공영방송 아카이브(AAPB) 등 해외 영화·방송·영상 분야 공공아카이브 워크플로우에서는 메자닌 파일 자동생성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 NFSA와 벨기에 Meemoo는 2020년 이후 ‘긴급 디지털화 전략’ 등을 수립하고 국고에서 관련 예산을 배정받았다. 2025년을 전후하여 재생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는 마그네틱 비디오 매체를 디지털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영상’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체의존적인 시청각 기록의 특성에 따라 물리화학적 훼손과 손·망실에 취약한 아날로그 매체들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 차원의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영구보존 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승인받지 않은 접근에 의한 기록물 이용, 변경, 훼손 및 삭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포함한 권한관리를 수행하고, 시스템과 기록물에 대한 임의의 접근시도 이력을 감사증적으로 남겨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⁴³⁾ 즉, 기록물의 추적, 접근 제어, 기록물 변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기록물 관리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5) ‘공공영상’아카이브의 ‘공공영상’ 접근성 보장 및 권리관계 관리 기능

‘공공영상’아카이브에 수집된 컬렉션은 일반이용자들이나 분야별 학술연구자들이 문화향유나 연구·교육 목적으로 ‘공공영상’을 재시청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 한편, 방송·영상 제작자 및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콘텐츠를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 등에 방

43) 기록관리 공공표준 NAK 7:2020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v1.3); ISO 14721 :2012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OAIS) - Reference mode

송·영상콘텐츠를 보존하기 위한 예외적인 기관 지정이 가능하지만, 보존된 콘텐츠를 공공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방송법』, 『영상진흥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공공 차원에서 방송·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앞서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공간에서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공공영상’에 관한 정확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저해상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원본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공공영상’에 관한 저작권 분쟁 이슈 해결, 저작인격권, 초상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 보호체계, 수집·관리·활용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또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편, 여러 영역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공영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형 신설기구를 마련하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안에 명시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한국영상자료원 등 ‘공공영상’을 관리하는 각 영역 관할 기관들의 역량을 모아 ‘협력형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모델(최효진, 2018, 141)’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형 관리모델은 특정 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며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만을 위해 기능하지도 않는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미디어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운영하는 모델이다.

6)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련 표준화 및 다양한 정책마련

또한, 본 논문의 4장에서 그 한계를 짚어본 기술적 표준화 정책 또한

‘공공영상’아카이브의 중요한 역할이다. 즉, 영구보존 및 복원 등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차원의 표준(메타데이터, 보존용 및 활용용 표준포맷, 저작권 침해방지 등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공공영상’보호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법제도·권리관계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상’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 시청각 부문 기록관리 정책기구들은 최근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호주 NFSA와 벨기에 Meemoo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이 있다.⁴⁴⁾ 영화 필름이나 TV, 라디오 방송자료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는 영상자료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공립 기관의 역할만으로는 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향후 신설될 전문기구 ‘공공영상’아카이브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민참여형 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44) 호주와 벨기에에는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 유형 가운데 이른바 ‘리더십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더십형 모델’은 수집·서비스를 비롯한 기록관리 기획 및 실행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공유해야 할 공통의 원칙을 제공하고 이를 지침, 매뉴얼, 교육, 훈련 등의 방식으로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호주 NFSA는 『영상자료 홈케어(Preservation at Home)』 등 필름, 비디오, 오디오 등 매체별 소장 자료 보관 및 장비관리 방안, 클리닝 방법, 재생장비 수급 방법, 물리화학적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훼손 시 응급처치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벨기에 Meemoo는 문화 및 미디어 분야 160여 곳 콘텐츠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툴(tool) 활용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의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카탈로깅, 사진컬렉션 관리, 디지털화, 열람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아날로그 매체의 디지털화와 같이 비교적 질의응답 비율이 높은 분야는 별도의 지식공유 플랫폼『knowyourcarrier.com』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최효진, 2021, 105-122).

7.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 수집·관리·활용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청각 기록관리 전문화 및 관련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수집 현황과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항과 관련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의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생산·소장한 시청각 기록관리의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이 공백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공공표준 내용 개정, 전문기구 신설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2018년 경남기록원 개원, 2019년 서울기록원 개원 등에 따라 권역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신설되고 해당 기관에서의 정책 기능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의 한 갈래인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의 수집 현황, 관리와 관련한 조례, 표준, 지침 등이 어떻게 마련되고 기록관리 현장에 활용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이관 통계 및 해외기록물·민간기록물 수집통계를 중심으로 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시청각기록물 개별 아이템 단위의 내용 분석 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법』 등에 명기된 ‘국가적 차원의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실제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영구보존되는지, 해당 기록물은 적절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권고문에 따르면, 회원국의 ‘국가영상(National Production)’에 해당하는 콘텐츠 수집 및 관리는 해당 국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시청각기록물, 극장이나 온라인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영화, TV·라디오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은 분야를 불문하고 사회구성원 공동의 기억을 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갖는 기록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은 『공공기록물법』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관리 기본정책에 관한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이관·수집·관리·활용에 방점을 두면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해외에서 수집될 수 있는 사진, 음반, 동영상 및 구술채록 등은 ‘민간기록물 수집’이라는 보완적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영상’의 공적 활용에 관한 정책은 영화·방송·영상 등 각 분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걸쳐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추진될 수 있지만,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물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기에 앞서 공공 부문에서 시청각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제도·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국가적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요소를 검토하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좀 더 전문화된 방식으로 공공 부문 시청각 기록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시청각 기록관리 리더십을 확립하는 정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1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기록원 (2011a). 디지털화 영상기록물 자동복원기술 연구 개발.
 국가기록원 (2011b). 디지털화 영상기록물 자동복원 병렬처리 구조설계 및 시스템 개발.

- 국가기록원 (2012). 훼손된 디지털화 음성기록물 자동복원기술 연구개발.
- 국가기록원 (2013). 디지털시청각물 보존포맷 설계 및 변환기술 연구.
- 국가기록원 (2014). 시청각기록물 자동 품질검사시스템 개발.
- 국가기록원 (2015). 시청각물 품질오류 검출 및 원인추적 분산처리 기술 연구.
- 국가기록원 (2016). 클라우드기반 시청각자료 통합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2017a). 디지털포렌식 기반 대용량 시청각기록 포맷변환절차 및 장기 보존포맷 연구.
- 국가기록원 (2017b). 시청각기록 음성신호의 텍스트(문자) 변환 연구.
- 국가기록원 (2019. 9. 20.). (국가기록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5차 간담회 결과 보고.
- 국가기록원 (2020). 2019 국가기록백서.
- 국가기록원 (2020. 1.15.).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2020-2024.
- 국가기록원 (2021). 2020 국가기록백서.
- 국가기록원 (2021. 6. 30.). 2021년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 권정아, 이계혁, 진승식 (2011).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21-142.
- 김근욱 (2021. 5. 9.). [유튜피어 동영상 골리앗?...이젠 '검색'도 유튜브 시대. 뉴스1,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235560>
- 남영준·문정현 (2010). 시청각기록물의 기술요소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67-80.
- 박지태 (2018).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57, 113-136.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2021 방송산업 실태조사.
- 백육인 (2021). 글로벌 혼종화 시대와 지적재산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코로나19 이후의 한류. 서울: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심보미·장윤금 (2018).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선 방향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325-344.
- 에릭 레이먼드 저, 정직한, 최준호, 송창훈, 이기동, 윤종민 역 (2015). 성당과시장: 우연한 혁명으로 일어난 리눅스와 오픈소스에 대한 생각. 서울: 한빛 미디어.
- 이영주, 박은희, 김경환 (2006.9.). 방송통신융합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시대 MBC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75-101.

-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프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95-145.
- 최효진 (202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및 활용 방향. 박사학위논문.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2). 미디어 공공성·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 콘텐츠의 공적 활용 방안: 디지털 방송통신 콘텐츠 아카이브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언론수용자조사.
- 한스 보름 (1987). 사회와 기록유산의 형성: 사초평가를 둘러싼 쟁점 (Hans Booms (1987). Society and form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 24, 69-107). In 오항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사초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서울: 진리탐구출판사, 167-221.
-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79-126.
- Edmonson, Ray (1997). "Nature of the AV Media"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0-17.
- Edmonson, Ray (1998). Une philosophie de l'archivistique audiovisuelle, Programme general d'information prepare par les membres de l'AVAPIN(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interest network). Paris: UNESCO.
- Edmonson, Ray (2016). Audiovisual Archiving -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 FIAF Technical Commission (2019). Survey on Long-term Digital Storage and Preservation.
-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편 (1997). Audiovisual Archives : A Practical Reader.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43-54.
- Sande, Steve (2014. 1. 21.). Backblaze stats show most/least reliable hard drives: Hitachi leads the pack with lowest annual failure rate.
<https://www.engadget.com/2014-01-21-backblaze-stats-show-most-least-reliable-hard-drives-hitachi-le.html>.

Stewart, Selby (2021. 12 .3.). Federal funding for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to save hours of at-risk footage of Australian life. <https://www.abc.net.au/news/2021-12-03/federal-funding-to-save-historical-records-of-australian-past/100671398>.

〈관련법 및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68호.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18767호.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769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157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20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772호
방송법. 법률 제1851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영상진흥기본법. 법률 제8744호.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617, 발의연월일 2020.9.8.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7893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훈령 제207호.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1958년 공공기록물법.

〈공공표준 및 지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8:2021(v2.2).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12:2018 (v3.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시청각기록물. NAK 22:2009(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 26:2018(v2.0).
국가기록원 (2009).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지침.
국가기록원 (2019. 3.). 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
국가기록원 (2020. 12.).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 In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21st session, Belgrade, 23 September to 28 October 1980, v. 1: Resolutions,

〈참고사이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미국아키비스트협회 용어사전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https://dictionary.archivists.org/>.

증평기록관 디지털아카이브 ‘증평, 우리의 기억’ VR콘텐츠 <https://larchiveum.net/contents/vr/>

우토로마을아카이브 <https://utoro.kin.or.kr/>

프랑스 방송통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https://www.csa.fr/>

Seagate *Hard disk drive reliability and MTBF / AFR*

<https://www.seagate.com/kr/ko/support/kb/hard-disk-drive-reliability-and-mtbf-afr-174791en/>.

[부록 1]

〈표 9〉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현황

유형별 수집량	내용	수집시기	수집량(점)
사진	최민식작가 사진필름	2007	144,424
	조선풍물 사진엽서, 일제시대 문서 등	2007	1,210
	최민식작가 인화사진 10,516점	2008	10,516
	6·3항쟁 관련기록	2008	58
	YWCA 회의록 및 사진앨범	2011	255
	기타 기증신청 기록물(최초 원양어선 관련 기증 기록, 천안함 관련 사진 기록)	2012	4,820
	故 최민식 작가 사진필름 및 인화사진 등	2013	15,000
	故최민식 작가 추가기증 필름류	2017	2,000
	故최민식 작가 사진 원본 필름류	2018	5,000
시청각기록 (영상, 음성)	새마을운동 관련 시청각 기록	2008	338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사진 및 영상으로 기재된 기록물 수집내역만 발췌.

민간기록물 수집현황에 소개된 기록물 군 가운데 사진, 음성, 영상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부록 2]

〈표 10〉 국가기록원 구술기록물 수집현황

유형별 수집량	내용	수집시기	수집량(점)
수집 572점	국가보훈처 소장 독립운동, 한국전쟁 관련 구술기록	2007	250
	한국전쟁기 함평민간인 희생 관련 구술기록		
	독립운동 차관상 구술기록	2008	1
	한국해운 60년 구술자료	2015	21
채록 160점 (직접생산)	‘UN 남북동시기입’ 관련 구술기록(2007, 9점)	2007	9
	김철 박사 생애사(원자력개발 관련)		1
	6·3항쟁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증언	2008	7
	6·3항쟁 2차 구술기록	2009	24
	경부고속도로 건설관련 구술기록		13
	경부고속도로 건설관련 2차 구술기록	2010	12
	1960~70년대 국민생활정책 구술기록		9
	국민생활개선-복지 관련 구술기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2011	14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영상구술채록		19
	국비유학 1세대 구술채록	2012	11
	대한민국 원양어업 1세대 구술채록		4
	대한민국 공보(公報) 1세대 구술채록		11
	무상원조 수원국 시기(제1공화국) 관련 구술채록		10
	주요 민간기록물 기증자 구술채록	2015	5
	새마을운동 주요 관계자 구술채록	2016	5
민간기록(공주 유구 북한실향민) 구술채록	2017	5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부록 3-1]

〈표 11〉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사진) 수집현황

내용	수집 시기	수집량
영국 국정홍보처 소장 및 개인 기증기록 이승만대통령 사진	2003	84점
몽골 국가기록원 소장 한국 관련 사진	2004	203매
러시아 사진영상기록보존소 소장 사진	2006	284점
몽골 국가기록원 소장 북한-몽골관계 사진		80점
러시아 사진영상기록보존소 소장 광복전후 남북한 관련 사진	2007	309점
영국 국가기록원(TNA) 소장 주한영국영사관, 조계지 등 관련		15점
일본 재일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사진(DVD 18장)	2008	65,000점
유엔 구호 및 유엔 본부 내 한국문제 토의장면 등 사진		2,885점
브라질 이민사편찬위원회 등 한인단체 소장 한인 관련 사진		308점
러시아 연방국립기록보존소 소장 비밀해제 사진	2009	41점
일본 재일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사진(DVD 23여장)		36,542매
불가리아 국가기록원 남북한 외교 관련 문서	2011	86점
미국 프린스턴신학대 소장 대한제국 시기 'Moffett 컬렉션' 사진		191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대한제국~광복전후 및 6.25전쟁 관련 사진		570점
미국 럿거스대(뉴저지주립대) 소장 대한제국 시기 'William Griffis 컬렉션' 사진	2012	50점
불가리아 국가기록원 소장 한국 관련 사진		33점
유네스코기록보존소(본부) 소장 1950년대 교육원조 관련 사진		157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일제강점기~광복전후 및 6.25전쟁 사진		3,250점
독일 광산기록보존소 파독 광부 사진	2013	75점
독일 사회운동기록보존소 소장 파독 광부 관련 사진		56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광복전후~6.25전쟁 및 전후(전투·피난민·유엔군·UNCACK구호·정전협정 등) 사진		3,511점
미국 럿거스대(뉴저지주립대) 소장 대한제국 시기 'William Griffis 컬렉션' 사진	2014	58매
독일 본대학 소장 1909~1910년 한국 관련 사진		158매

내용	수집 시기	수집량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광복전후 및 미군정기~6.25전쟁 전후 사진(인천상륙작전 등 주요 전투, 전쟁포로, 포로수용소, 피난민, 정전협정, 전후복구 등) 사진	2015	5,735매
미국 전쟁역사기록보존소 소장 6.25전쟁 시 불가리아 의료간 북한 파견 관련 사진		653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6.25전쟁 전후 시기 사진(시베리아 한인, 인천·원산상륙작전, 한미해병대-한국노무단, 피난민수용소, 선거, 원조 등)	2016	2,812매
개인기증자(날 미살로프) 1960년대 주한미군 생활사 및 한국 생활사 사진		1,200매
유엔 사진도서관 소장 이승만·박정희·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사진		11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6.25전쟁·재일동포복송·남북한 사건·사고 관련 사진		749매
미국 국립인류학기록보존소(NAA) 소장 구한말 한국 풍경 및 생활사, 주요 인물 관련 사진	2017	532매
전 주한미군 폴 블랙 기증 1950년대 한국 생활사 관련 사진기록		109매
미국 록펠러재단 소장 조선말크사진 편찬 및 남산드라마센터 건립 관련 사진		112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6.25전쟁 전후 시기 사진(개성 휴전협정, 부산항·원산항 한미 해군 전투 등)		558매
일본 故 하야시 에이다이 기증 조선인 강제연행 문서·사진		6,432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사진		64점
카자흐스탄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사진		51점
독일 외무부 문서고 소장 6.25전쟁시 북한과 동독의 연대, 양국이 교환한 서신 등 사진	427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IWG-일본전범 관련 사진, 미 해군6.25전쟁 관련 사진	2019	1,280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6.25참전군인 루퍼트 넬슨 칼라 슬라이드(원본)		240판
미국 서재필기념재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재단 관련 기록사진		266점
유엔 UNKRA 관련 사진	2020	2498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6.25 전쟁전후 사진, 베트남전쟁시 한국군 사진		399점
호주 전쟁기념관·뉴사우스웨일즈·빅토리아 주립도서관 6.25전쟁관련 사진	2020	277점
합계		138,351점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부록 3-2]

〈표 12〉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음성/영상) 수집현황

유형별 수집량	내용	수집 시기	수집량
음성 611점	유엔 유엔시청각도서관 소장 1953~1963년 한국 관련 오디오파일	2010	50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립 관련 오디오(매체미상)	2012	1점
	유엔아카이브 소장 UNKRA 관련 오디오(LP판) 기록물	2018	174판
	미국 의회도서관 2차 대전 당시 라디오 뉴스 등 음향		61점
	러시아 국립음성문서보존소 일본 731부대 재판 음성기록 파일(분량: 약 22시간)	2019	18개
	러시아 국립음성문서보존소 북한주요인사 연설, 축사 음성 기록 (분량: 9시간 35분 5초)	2020	33점
영상 1,087점	러시아 사진영상기록보존소 소장 비디오영상 (분량: 1,468분)	2006	8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북한 관련 영상기록(VHS, 분량: 732분)		34점
	유엔 유엔시청각도서관 소장 1950년대 한국 관련 영상	2007	31점
	일본 외교사료관 한일관계자료문서 18,410매, 재일한인단체 소장 북한 관련 (필름 5점)		109점
	유엔 유엔시청각도서관 소장 1950~80년 비디오 자료 (베타테이프 18개)	2008	94점
	일본 NHK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영상기록 (124초)	2012	1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립 관련 필름		1점
	미국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광복전후 및 6.25전쟁 관련 영상(분량: 1,255분)	2013	118점
	독일 뉴스필름 아카이브 소장 파독 광부 관련 영상		1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광복전후~6.25전쟁 당시 한국 관련 영상(전투·방역부대·난민후송·인천상륙작전·닉슨 방한 등) (분량: 2,868분)	2014	267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광복전후~6.25전쟁 전후(임시정부·미소공동회의·국경전투·볼모고지·인천상륙작전·편치불·USIA-ECA-FOA-UNKRA 구호) 영상 (분량: 1,438분)	2015	135점
	불가리아 국립영상기록보존소 소장 1948~1975년 생산 북한 관련 영상		57점

유형별 수집량	내용	수집 시기	수집량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칼리지파크) 소장 6.25전쟁 전후 시기 등 영상(원산, 불모고지 전투, 맥아더·하지·클라크·닉슨 등 방한, 판문점 포로교환, 전후원조 등, 영상길이: 886분)	2016	94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영상	2017	8점
	카자흐스탄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영상(선봉)		18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IWG-일본전범 관련 영상, DMZ 관련 영상		63점
	미국 의회도서관 2차 대전 당시 영상자료	2019	11점
	미국 서재필기념재단 '3·1운동100주년기념행사' 관련 기록 영상		1점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일본군'위안부' 영상, 6.25 전쟁전후 영상	2020	36점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부록 4]

〈표 13〉 국가기록원 영화/방송, 영상 기획수집(단위: 점, 편)

수집 시기	영화		방송	
	(수집처) 기록물내용	수집량	(수집처) 기록물내용	수집량
2008	(한국영상자료원)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 문화재 등록 한국 고전영화	7	(EBS) <일요초청특강> 등 교양 프로그램	77
2009	(한국영상자료원) <집 없는 천사>, <무궁화 동산> 등 기록영화, 극영화	16	(MBC) <그때를 아십니까>, DMZ는 살아있다 등 다큐	135
2010	(한국영상자료원) <청춘의 십자로>, <독도와 평화선> 등 기록영화, 극영화	20	(구 동아방송) <정계야화> 등 '60~'70년대 교양·보도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520
2011	(한국영상자료원) 순종황제 인산습의 등 기록영화	15	(EBS) <특종비사> 등 EBS 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한국독립제작사협회) <한국의 장인>, <CEO KOREA> 등 (지역민영방송사) TJB(대전), JIBS(제주) 등 지역민방 프로그램	734
2012	(한국영상자료원) <오발탄>, <5인의 해병> 등 기록영화, 극영화	15	(SBS) 남북정상회담, IMF 청문회 등 시사 보도물 (MBC) 다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송 및 촬영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8~'10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작(다큐·교양)	683
2013	(한국영상자료원) <언니는 말괄량이>, <그 여자의 일생> 등 고전 극영화 (개인기증자) <로맨스그레이>, <민며느리> 등 신상옥 감독 영화	25	(MBC) 다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촬영 원본 (EBS) <다큐프라임> 등 EBS 제작 교양다큐 프로그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1~'12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작(다큐·교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1~'13년도 제작 공익광고(방송물·인쇄물)	2,071

수집 시기	영화		방송	
	(수집처) 기록물내용	수집량	(수집처) 기록물내용	수집량
2014	(개인기증자) <효녀심청>, <소금>, <탈출기> 등 신상옥 감독 연출·제작 영화	57	(한국인터넷진흥원) '09~'13년도 양방향 프로그램 국고 지원작 (KBS) '70~'00년대 정치, 보도, 스포츠 주요 프로그램 (MBC) '92~'13년도 주요 종군위 안부 소재 프로그램 (SBS) '81~'13년도 주요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4,394
2015	(한국영상자료원) <수업료>, <태양의 거리>, <정의의 진격>, <증언> 등 고전 극영화 (영화배급사) <낮은 목소리>, <행당동 사람들> 등 다큐멘터리	12	(MBC)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 정치 소재 뉴스 및 제작소재	85
2016	(영화배급사) <사당동 더하기>, <끝나지 않은 전쟁> 등 다큐	7	(MBC) 압록강수력발전공사(1930), 새마을운동, 해외건설 관련 프로그램 (SBS) IMF 경제위기 및 극복 관련 프로그램 (동아건설, 포스코, 한국전력) 리비아대수로공사, 포항제철 건설과정, 전기절약 캠페인 관련 영상	233
2017	(영화배급사) 사회분야 다큐멘터리 및 국가인권위 제작 인권영화	37	(MBC) 한국 사회 분야 주요 사건·사고 관련 방송 소재 영상기록물	141
2018	(영화배급사, 개인기증자) 이주노동자 소재 영화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 영상물	394	(MBC) 경복궁 복원 등 연도별 정부 문화활동 관련 방송물 (한국문화재단) 훈민정음, 의궤 등 우리 세계기록유산 관련 영상	130
2019	(영화배급사) '위안부', 고려인, 기지촌 소재 다큐 영화 (개인기증자) 재일(在日) 한인 관련 고찬유 감독 기증 영상	617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근로정신대 관련방송물 (MBC) 강제징용, 삼일절, 위안부, 한국전쟁 등 관련 방송물 (SBS) 독립운동, 삼일절, 한국전쟁 등 관련 방송물	75
2020	(영화배급사) 민주항쟁, 재외한인, 국민적 관심사 등 다큐영화	32		
합계		1,277		9,278

※ 출처: 국가기록원 주요통계, 2021년 6월 30일 기준.